

사단법인 굿이너프

정관

제 정 2023.03.18.

사단법인 굿이너프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굿이너프”(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Good Enough’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빈곤, 재난,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저개발국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개발 및 긴급 구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저개발국가 아동의 통합적 발달을 위한 영양, 보건 및 교육 등의 종합적 프로그램 제공
2. 저개발국가 여성,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3. 저개발국가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기회 제공 통한 인재 육성
4. 다문화 청소년 등에게 세계시민의식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강사 양성
5.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 제3국 유학생 및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인원실점리적 안정 지원
6. 기타 본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공직 선거 관련 금지]

- ① 법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법인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운영준칙]

- ① 법인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법인은 민법·관계 법령·이 정관 및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자격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 구분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상세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법인의 총회를 통해서 법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단, 일반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포함한 각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회비 및 부담금의 금액, 납부 방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회원은 법인의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으며, 징계의 방법, 절차 및 종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내

② 제1항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민법상 이사가 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등]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 정족수가 되고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선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 [상임이사]

-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그로 인해 본 법인 명예가 훼손되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또는 회계 부정, 현저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결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구성 및 종류]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면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결의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정관 변경

2. 법인의 선출직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 및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8.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등

제22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장의 해임권 관련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회원의 2분의 1이상의 투표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⑤ 법인회원은 그 법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 ① 이사장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시 출연받은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기본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후원금
 3. 찬조금 및 특별회비
 4. 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 ② 법인은 전항에서 정한 재원(수입)이 발생한 경우, 공익을 위하여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맞게끔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재원(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5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감사】 법인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공고방법

제39조 【공고방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0조 【지정기부금의 공고】

-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1조 【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운영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자문위원회

제42조 [자문위원회]

-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단을 둘 수 있다.
- ② 사업단은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 경력자, 피고용인, 공익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사업단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며, 이사회에서는 사업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 [자문위원회 구성] 본 법인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관련단체 추천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44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45조 [결의]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 1.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 4.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②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회의록]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문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10장 후원회

제47조 [후원회]

-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 및 후원금을 내는 자들로 후원회를 구성한다.
- ② 후원회의 회원은 제2조,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의 활동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회원약관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로 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는 법인이 정한 후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입출금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법인은 후원회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 회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회원 약관으로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4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법인해산】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1조 【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2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3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직 위	성 명	날 인
발 기 인	박재형	
발 기 인	김병국	
발 기 인	이승목	
발 기 인	권유란	
발 기 인	이은정	
발 기 인	김수진	
발 기 인	권현정	

<별지 1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재산구분 (지목별)	수량(평)	평가액	비고
기본재산	-	50,000,000원	정기예금 : 30,000,000원 사무실 보증금 : 20,000,000원

<붙임 1>

법인이 사용할 인장

